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1979 발의연월일: 2021. 8. 10.

발 의 자:이개호·김병기·김승남

서삼석 · 송갑석 · 송석준

위성곤・유동수・윤재갑

홍성국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8조제3 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 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대해서는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.

그러나 대통령령에서 규정되어 있는 가액이 최대 10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우리 농축수산물의 경우 품목에 따라 10만원을 초과하는 품목이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성수기인 설 및 추석등의 명절등에 선물로 활용할 수 없어 해당 품목을 생산하는 우리 농축수산농가가 출하 및 매출 감소로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지난해 추석 및 올해 설 명절의 경우 우리

농축수산물에 대한 선물가능 가액을 일시적으로 20만원까지 상향하여 우리 농축수산물 매출 상승에 큰 기여를 한 바 있음.

이렇듯 우리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선물에 대한 가액 상향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이를 영구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. 이에 따라 설 및 추석 명절 이전 30일부터 종료 후 7일 이내의 의례적인 선물의 경우 우리 농축수산물에 한하여 그 가액을 20만원한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8조제3항제2호단서 신설).

법률 제 호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설날 전 30일부터 설날 후 7일까지와 추석 전 30일부터 추석 후 7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선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만원 한도 내에서 가액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- 가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
- 나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 공품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	제8조(금품등의 수수 금지) ①・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	3
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	
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	
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	
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·	2
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	
제공되는 음식물·경조사비·선	
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	
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	
등 <단서 신설>	<u>다만, 설날 전 30일부터</u>
	설날 후 7일까지와 추석 전
	30일부터 추석 후 7일까지의
	기간 동안에 제공되는 선물
	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
	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
	만원 한도 내에서 가액 범위
	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가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

	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
	<u>농수산물</u>
<u><신 설></u>	나. 「농수산물 품질관리법」
	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
	<u>농수산가공품</u>
3. ~ 8. (생 략)	3. ~ 8. (현행과 같음)
④・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